

#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(안)

## 1. 의결주문

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(안)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## 2. 제안이유

상위법(지방세기본법)이 개정되어 상위법령 위임범위를 벗어난 조문 등을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기준을 반영하여 납세자 이해를 높이기 위함

## 3. 주요내용

### 가. 공탁규정 삭제

- 배분한 금전 중 채권자에게 지급하지 못해 구금고에 예탁한 경우 6개월 초과시에 공탁해야 하는 규정 삭제(제17조)

### 나. 체납처분 중지 시 공고기간 연장으로 납세자 알 권리 증진

- 「지방세기본법」 제98조에서는 체납처분에 관하여 국세징수법을 준용토록 하고 있으므로, 현행조례의 상위법령 위배소지를 해소하고 납세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차원에서 공고기간을 1개월로 연장(제39조)

다. 기타 법제원칙에 맞는 조문 정비, 알기 쉬운 법률용어 사용

- (1) “우편”에 대한 정의 규정 삭제(제2조)
- (2)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기한 연장의 경우, 상위법령에 맞게 원칙적으로 기한만료일 3일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하고 예외적으로 만료일까지 제출할 수 있도록 단서 신설(제8조)
- (3) 제목 및 본문 내용 등 “보통우편”을 “일반우편”으로 개정(제9조·제10조)
- (4) 지방세기본법 제64조의 미납지방세 열람 신청자의 범위 축소에 따라 제14조제1항 중 “미납구세”를 “법 제64조에 따른 미납구세”로 개정(제14조)
- (5) 조문명을 조례 내용에 맞게 수정하고, 상위법령에 맞추어 용어 정비(제18조)
- (6) 조례의 원활한 이해를 위해 인용조문 명확화 : “영 제67조 및 제68조”를 “법 제80조 및 조례 제22조”로 개정 (제22조)
- (7) 통일성 있는 조문구성을 위해 “한꺼번에 징수하여야 한다”를 “징수할 수 있다”로 용어 수정(제23조)
- (8) 상위법령 위임범위에 벗어나거나 상위법령 위배 소지가 있는 일부조항 삭제(제19조제1항, 제24조, 제29~제31조)
- (9) 상위법령에 규정된 용어 또는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부합하게 정비(제25조, 제27조, 제28조, 제37조, 제45조)
- (10) “법 제141조”를 “법 제141조제1항 각호”로 인용조문 수정(제47조)

#### 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지방세기본법 제72조 등

나. 예산조치 : 별도 조치 필요없음

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 타

(1) 신·구조문 대비표 : 별첨

(2) 입법예고 : 8월 중

(3) 규제심사 :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

#### 5. 행정영향 분석

가.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(안) : 제17조 등

(1)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

- 납세자에게 알 권리 보장과 재산처분에 대한 권익 보호
  - 채납처분 집행의 중지를 공고하는 경우 상위법령에 맞게 공고기간을 현재 10일에서 1개월로 연장하여 납세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재산 처분에 대한 권익 보호
- 관련 규정에 대한 납세자의 이해도 향상에 기여
  - 법제 원칙에 맞게 알기 쉬운 용어로 개정하여 관련규정에 대한 납세자의 이해도 향상에 기여

(2) 우리구에 미치는 영향

- 공매의뢰 결과 미수령금 처리절차 간소화에 따른 행정력 낭비 방지
  - 배분한 금전 중 채권자의 미수령으로 인하여 구 금고에 예탁한 금액 중 6개월 초과시에는 법원에 공탁해야 하는 현재 조례를 삭제함으로써 공매의뢰 미수령금에 대한 처리 절차 간소화